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1. 재정보증의 개요 및 중요성 증대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가족 초청(결혼을 통한 초청 포함)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 재정보증(I-864)이 가장 중요한 요건 (requirement)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취급했었습니다. 친이민적인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 여론이 비이민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재정 보증의 구체적 내용(자격 요건, 보증 기간 등)

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3)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 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증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전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심미 임플란트 치료 II



치아가 상실될 경우 일어나는 치아 주변 조직의 변화는 심미성이 강조되는 상악 전치 부위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 인자라는 점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심미성을 유지하거나 호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모색해 오긴 했지만 아직 예측 가능한 치료법은 사실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조직 변화의 양을 줄이기 위해 현 임상에서 시도되고 있는 부가기술법들과 심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을 치료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의 결정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 연조직의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물론 그냥 임플란트만 심는다고 조직의 변화가 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플란트 크기와 치아 뿌리의 크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에 충분한 뼈이식이 병행되어야 변화의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도 중요한데 아무리 조직 변화의 양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띄는 정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변화는 치아의 혀쪽 방향과 뿌리쪽 방향으로 주로 일어나는데 이런 조직

변화의 방향을 고려해서 임플란트의 깊이와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치아 주변 조직이 상당량 파괴되었거나 임플란트를 고정할 뼈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는 즉시 식립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치아 발치 후 발생할 조직의 변화를 최소화 노력을 구하든지 조직 파괴전 상태로 조직을 재생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주변 조직의 파괴는 없으나 임플란트를 식립 고정할 수 없는 경우 발치와에 뼈이식을 하여 발치와가 치유되는 동안 발생하는 조직의 변화를 줄이도록 합니다.

이 술식을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하며 임플란트 식립이 고려되는 부위뿐 아니라 통상적인 브리지 시술에서도 심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 1435호에 계속됩니다.

사진=shutterstock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